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야고보서

부한 자에게 주시는 경고

(약 5:1-6)

The Warning to the Rich Man

(James 5:1-6)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복들 중에 물질의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욥, 요셉, 다윗, 모르드개, 야베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빌레몬 등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내용이 바로 재물이고, 예수님의 38개의 비유 중에 무려 16개가 바로 재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material blessings are clearly among the blessings that God gives us. From beginning Abraham to Job, Joseph, David, Mordecai, Jabez, a couple Priscilla and Aquila, and Philemon, they possessed a lot of property. During Jesus' work on the earth, 16 parables are about material blessings.

Nevertheless, as the Bible mentions the material blessings, Jesus mentions the dangers about materials and the trap that could be fallen by the material possessions.

James, the Apostle gives very strong messages about the rich man in chapter 5 of his last lett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물질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것만큼, 물질에 대한 위험성과 물질로 인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함정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서를 마치는 5장에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부한 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 The warning about wrong materialism of the rich man

"Now listen, rich people, weep and wail because of the misery that is coming on you" (James 5:1).

James the Apostle frankly says that rich people weep and wail, because of misery that is coming on them. According to the worldly rules, those who were being tested weep, and rich people are happy. But According to God's law, those who were put to the test and pain should be joyful, and the rich people who pursue pleasure should weep and wail.

1. 부한 자들의 잘못된 재물관에 대한 경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약 5:1).

야고보 사도는 단도직입적으로 부한 자들이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법칙에 의하면, 시험 당한 사람들은 울고, 부자들은 기뻐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나라의 법칙에 따르면, 시험 가운데 슬픔과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기뻐하고, 쾌락을 탐닉하던 부자들은 울고 통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영향을 받아 정의와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는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쌓아두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약 5:2). 부자가 되는 것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천국 소망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을 보호자 삼고 살게 됩니다.

2.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부자가 재물의 많고 적음의 영향을 받아 정의와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는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쌓아두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약 5:2). 야고보 사도는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어서 썩히고 좀먹게 해서 버리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약 5:6).

모든 가난한 자들이 다 의롭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가난해 진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인들은 부자들에게 죽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인들의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성경은 증거 합니다.



5:6).

All the poor are not always righteous. Because James cannot use the wrong method in order to observe God's word, he calls the poor as righteous people. The rich condemned and killed such righteous people. Nevertheless, these righteous people did not resist by the time they died.

However, the Bible gives us the evidence that such righteous people voices were heard by Jehovah God's ears.

My beloved Christians,

By thinking that the blessings that God gives are the most reasonable, and by looking at the Lord of God, Jehovah,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live your blessed life recognizing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복이 가장 합당한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직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인정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40학기 서울성경대학 · 열린 프로그램

9월 5일(월) ~ 11월 13일(주일), 10주간

서울교회는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매 년 전, 하반기 서울성경대학과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해 왔다. 2016년 제40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2016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진행 된다. 대상은 전교인이며 기간은 2016년 9월 5일(월) ~ 11월 13일(주일), 10주간 진행되며, 소정의 수강료가 있다.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과목 (10주)	고린도전서	화, 오전 6:10~7:00	조원영 목사	601호
	마가복음	금, 저녁 7:00~7:50	유문건 목사	601호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서준권 목사	501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교사양성반	주일, 오후 3:20~4:2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양성반	주일, 오후 3:2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전도학교(12주)	주일, 오후 3:10~4:30	배경애 전도사	506호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30~3:00	박영준 목사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	주일, 오후 3:30~4:30	서준권 목사	609호
수화학교 (3/6~6/19, 9/4~10/23)	주일, 오후 1:00~1:50	임규현 목사	606호
어머니 힐링스쿨	화, 오전 10:00~12:00	양세라 목사	601호
서울 아기학교	목, 오전 10:30~12:30	구본혜 전도사	706호
비블리오 바이블 스쿨	토, 오전 10:00~12:00	양세라 목사	702호



신천지 이단 색출을 위한 설문 실시

당회는 지난 8월 20일(토) 속회에서 신천지의 침입을 막고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신천지 이단 색출을 위한 설문을 실시한다. 이 설문은 부목사들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당회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이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락방 리더훈련 개강

다락방 리더훈련이 8월 31일(수) 수요1부 예배 후 본당에서 개강한다. 다락방리더들은 전원 참석 바란다. 또한 금주부터 다락방 모임을 갖는다.

2016 사랑의 바자 취소

당회는 지난 8월 20일(토) 속회에서 2016 사랑의 바자는 교회 사정 상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새가족 등록 절차 개선 강화 방안

교회가 어수선하고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신천지 추수꾼 및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침투하여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교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현실을 직시, 새가족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등록카드 작성은 대필 작성을 금지하고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되 **신분증을 확인**하며 등록 후 충분히 검증 검토 후 환영인사를 한다. 모든 새가족은 장년의 경우 등록카드 작성 후 202호에서 영접 후 **필히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사진촬영을 거

부하는 새가족은 등록절차를 보류한다. 교회학교도 장년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개인등록카드와 사진은 202호를 거쳐 멀티미디어부에 제출한다. 수평이 동된 교인(전입교인)인 경우 반드시 이전 출석교회에서 이명증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며 미제출 시에는 등록을 보류하되, 직접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년 및 청년 새가족은 **새가족 양육과정 4주**를 **필히 수료**하여야 하며, 이 과정을 수료치 않은 경우 등록을 유보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새

가족부 및 교회학교의 새가족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적응과정을 거쳐 교구담당목사 심방, 면담 후 새가족 등록관리부의 심의를 거쳐 등록 처리한다. 세례교인의 경우 1년, 미세례교인(원입, 유세, 학습)의 경우에는 세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는 공동의회 투표권 및 정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는 성도는 새가족부(부장 : 김금준 장로)나 사무국에 문의하기 바란다.

이중은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산 제사의 동기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동기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졌나?

1. 인류의 시조 아담의 예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고 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고, 그 죄 값으로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각 수고로운 노동과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땅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한 대로 그들은 죽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 약속을

주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5).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 가족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보여주셨다. 아담은 하나님의 자비로 죽음이 아닌 구원 약속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 아내를 산자의 어머니라 하와로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 약속을 믿은 신앙표현이다.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셋째 아들 셋을 통해 이어진 경건한 자의 조상이 되는 자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2. 죄인 중의 죄인인 바울의 예

핍박자 사울은 바리새인으로 그리스도께 대항하며 스테반을 죽인 장본인이다. 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한 그를 예수님이 직접 중단시키셨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는 그 주님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를 받은 자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1:15-16).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구원 얻은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

3. 나 자신의 예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아담, 바울의 자리에 놓고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힘입었노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엡 2:4-7).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사랑이며 은혜고 자비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크신 자비에 감격한 자마다 하나님께 몸을 드려 헌신해야 한다.

(다음 주 계속)

교회재정 공개의 건에 대한 교회의 답변

교회는 김민철 집사2 (6교구)가 제출한 교회재정공개의 건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수 신 : 김민철2 집사 (6교구)
- 주 소 : 인천시 강화군 00면 0리
- 제 목 : 정보공개요청자 서명 원본 제출 및 공개 방식 요청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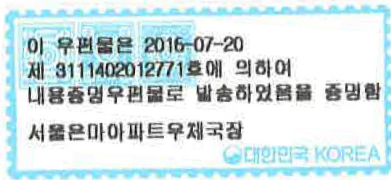
서울교회 당회는 서울교회 정보공개요청 (대표) 김민철2 집사 외 서명자 1,315명이 요청한 『서울교회 재정의 투명화를 위한 성도들의 정보공개요청』 (2016. 6. 29 접수)에 대하여

- (1) 서명을 받기 위한 발의문과 1,315명의 서명자들의 서명 원본을 제출할 것과
- (2) 정보공개요청이 내부 공개를 원하는 것인지, 또는 외부 공개를 원하는 것인지 밝혀줄 것과
- (3) 만약 외부 공개를 원한다면,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복수로 추천해 줄 것과 소요 경비를 요청인 측에서 부담해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위 문건을 게재하는 것은 재정공개요청에 관하여 교회가 지난 7월 20일 서류보안을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후속조치가 없음에도 일부 성도들이 마치 당회가 재정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거짓소문을 내며 유인물 배포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20일

서울교회 당회장 목사 박노철
서 기 장로 노문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TEL: 558-1106 FAX: 558-2111
박노철 목사
010-2229-2291



서울은마아파트 우체국
101-83-02925 4402-566-04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대치동, 은마아파트)
고객문의 전화 및 문자상담 : 1588-1300
평일 (09-18시), 토요일 (09-13시), 공휴일 (ANS만기)
영수증NO : 10253399
접수일자 : 2016-07-20 17:43
접수처 : 창구 02 홍석만

<국내통기(통상/소포)우편물>
발송인 : 06280 서울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7 (대치동 교회)
등기번호 요금 우편번호 수취인
3114-0201-2771 3,530 23041 김민철
익립특급 내용증명 통상

합계	1통	3,530원
총요금		(즉납) 3,530원
수납요금		3,530원
신용카드		3,530원

카드번호 : 5587-9800-****-6146
카드사명 : 하나카드, 매입사명 : 하나카드
할부개월 : 일시불, 승인금액 : 3,530
승인번호 : 05694716, 기입번호 : 0091608896

· 손해배상 등의 청구 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등기우편물 발송 시에는
· 환부료(1,630원)를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과 및 영리 청구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

등기우편물 배달조회는 우체국홈과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www.epost.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한국택배 2016년도 국가고객만족도(NCSI)
!배 서비스업 부문 10년 연속 1위

우체국 고객 안내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aeppost.go.kr)
또는 방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5자리 세무편번호를
사용하세요.
NCSI서비스와 청구서에 결제가맹점
우정사업본부로 표시됩니다

아가페타운부지 매입에 관한 조사위원회 보고서

2016년 4월 6일 당회는 그동안 아가페타운 부지 매입에 따른 근거 없는 이야기와 소문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을 선정하여 조사하기로 하다.

[조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 일시: 2016. 04. 06.
- 위원: 서명철 목사 서문석 장로 최차순 장로

[조사 기간]

- 2016. 04. 06. - 2016. 06. 30

[조사대상]

- 부지매입 계약 경위 및 매입금 대출관계
- 자금조달(차입) 내용
- 차입금 이자지급 경위
- 소문 진상조사

-관계자 면담: 이관규 안흥희 김민철2 이강인
은기장 정미연 장호림

[조사자료]

- 부지매입 계약관계 서류
- 회계 장부
- 영수증 및 전표

[조사방법]

- 관계서류 검토 확인
- 조사 대상자 면담
- 대상자 출석 면담식으로 면담 확인

[부지매입내역]

- 부지매입 계약 및 매입금액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455의 32필지(건물, 토지 포함)
- 면적: 33,810㎡(약 10,227 평)
- 매입금액: 일백삼십억(13,200,000,000-)

- 매도인: 백성학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00교회 안수집사)
- 매수인: 서울교회 [매입경위]
- 위 부동산 매입의향서를 2008년 4월 11일 체결하고 보증금 10%인 십삼억이천만원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계약을 작성한 후 본 계약을 2008년 5월 15일 체결하고 계약금 10%인 십삼억이천만원을 기 지불한 보증금으로 대체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
- 이어 2008년 5월 20일에 중도금 십팔억팔천만원을 지불하다.
- 이어 잔금 일백억원을 2008년 5월 23일에 지불완납하다.
- 계약당시 계약특약사항 6항에 의하면 매수인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이 건 매매 계약상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잔금을 지급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인 2008년 5월 23일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지 못할 경우(단 매수인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금 차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매수인은 2008년 9월 27일까지 별도 이자부담 없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인 2008년 5월 23일까지 잔금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2008년 9월 27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위 특약조항에 따라 우리교회는 5월23일 잔금 일백억원을 매도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교회이름으

로 대부를 받아 지불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다.

- 대출된 일백억원은 계약특약사항에 명시된 대로 2008년 9월 27일까지의 이자를 매도인이 부담하고
- 2008년 9월 30일 우리교회는 우리교회가 보유하고 있던 40억원과 물건 담보없이 오정수 장로로부터 60억원을 차입하여 100억원을 상환하게 되었다.(당시 은행담보제공 시 년 7.2% 이자율)
- 그 이후 차입금액 60억에 대한 월 0.6%의 이율로 이자지급을 하여 오다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아가페타운 공사 진행 등 자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이자 지급을 못하였으나 2010년 2월부터 은행법정이율에 맞게 정상적인 이자지급을 하여 왔으며
- 교회는 2008년 9월30일 오정수 장로로부터 차입한 60억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원금분할상환 방식으로 2013년 11월 17일까지 전액상환하게 되었다.

(위 사항은 매매 계약서 및 영수증, 차입금, 계정별원장 등을 확인한 사항임)

위 사항,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7.17.
위원 서명철 목사
서문석 장로
최차순 장로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재시무제 반드시 지켜져야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와 재시무제에 관한 교회 정관이 총회 헌법에 근거한 것임을 알려드린다. (편집자 주)

1. 교회 개혁의 초석, 목사·장로 안식년제

목사·장로안식년제는 목사와 장로가 교회에서 일정기간 시무한 뒤 안식년을 갖고, 안식년이 끝나면 당회의 신임투표를 거쳐 재시무여부를 결정케 하는 제도다.

이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선출되어 임직을 받은 목사나 장로가 교회의 발전을 위해 얼마간의 시무를 한 후에 휴무하면서 안식과 더불어 영성훈련과 타교회 탐방, 심신의 재충전, 예배의 회복 그리고 처음 임직할 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시행

우리교회는 지난 1998년 8월 15일부로 이제도를 채택, 시행에 들어갔다. 채택당시엔 목사는 6년 시무 후 1년간, 장로는 4년시무 후 1년간 안식년을 가진 뒤 안식년이 끝나면 당회의 신임투표를 거쳐 재시무하도록 했다. 재시무를 위한 당회의 신임투표는 2/3이상의 찬성을 얻도록하고, 이때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에 넘겨 신임투표를 받도록 했다.

또한 시행세칙을 통해, 목사는 교회헌편에 따라 안식년을 반납할 수도 있도록 했고, 장로는 우리 교회시무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이미 임직 후 4년이 지난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직후 시무기간이 4년이 되지않은 장로는 임직시를 기준으로 계산기로 하는 등, 경과규정을 두었다. 부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는 매년 말 당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했다.

안식년제가 채택된 그 해, 즉 1998년에 안식년을 맞게 된 이종윤목사는 교회헌편을 감안해 안식년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당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단, 신임투표를 행하기로 하고 무기명비밀투표를 한 결과, 당회의 전원만장일치로 이종윤 목사의 재시무를 받아들였다. 이종윤 목사는 6년이 지난 뒤 2005년에도 안식년이었으나 역시 안식년을 반납하고 시무를 계속했고, 2005년 10월 5일 다시 재신임투표에서 만장일치의 가결을 받았다.

당회는 아울러 교회헌편상 장로 30명선에 이를 때까지는 기수별로 안식년을 시행하기로 했다.

2007년 교회는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목사·장로 안식년을 '4년 시무후'에서 '6년 시무후'로 바꿨다.

대신 경과조치로 2003년 장립된 8대장로들은 4년시무후 안식년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2007년말엔 1대장로였던 김광신, 노문환 장로와, 8대 장로 가운데 최학인, 조성식, 신용식 장로가 안식년에 들어갔다. 이어 2009년말에 김대호, 윤봉준 장로가 안식년에 들어갔다.

3. 목사·장로 안식년제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

1) 교회 헌법 제2편 제1장 제2조의 '교회의 자유' 원리에 의해 "개인의 양심과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규칙, 교인의 자격, 교회의 정치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는 항목에 준하여 본 규정을 정한다.

2) 헌법 제2편 정치 1장 원리 1조에 의하면 각인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어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 서울교회 당회는 성경교훈에 위반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면서 양심의 자유를 통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목사·장로 안식년제도를 채택하였다.

3) 헌법 제 2편 5장 36조와 6장 46조에 각각 목사와 장로 휴무제도에 의거 서울교회 당회는 안식년제를 도입, 목사 6년 그리고 장로 4년 시무 후 1

년씩 안식년을 갖기로 한다.

4) 안식년 후 재시무를 할 때는 헌법 2편 5장 37조 2항과 6장 47조 2항에 목사와 장로가 자의 사직했다가 복직 할 경우 목사는 노회원, 장로는 소속 당회원의 2/3 이상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 서울교회 당회는 안식년을 가진 목사와 장로가 사직은 아니지만 휴무 및 사임의 복직에 대하여 헌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정신에 따라 당회원 2/3이상 허락을 받아 재시무기로 한다. 단 당회에서 2/3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하는 것이 신앙양심 상 합당하다고 서울교회 당회는 해석한다.

5) 목사가 안식년을 가진 후 당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를 거쳐 헌법 해석서 제 4장 52조 3항에 의거 처리한다.

6) 장로가 안식년을 가진 후 당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헌법 2편 6장 43조 2항, 헌법해석서 제 4장 62조에 의거 공동의회에 물어 시무여부를 처리할 수 있다.

7) "휴무기간 중 장로의 그 직위는 계속 되나 당회 성원수를 위한 정원에는 계산 되지 않는다."는 헌법해석서 제 4장 56조에 의거, 성찬식 시 교회 화목과 일치에 위해 휴무기간 중이라도 장로의 직분을 감당 할 수 있다.

4. 반향

서울교회당회가 한국교회의 갱신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목사·장로 안식년제도에 대해 교계안팎의 관심이 컸다. 교회개혁이 목사와 장로직제의 개혁에 있다고 볼 때 이 제도의 채택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그동안 일부 소수의 교회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적이 있을 뿐, 현실적인

계에 부딪혀 전면시행에 들어간 교회가 거의 없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교회가 초창기부터 이 제도를 결의하려 했던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받았다.

우리교회의 목사·장로임기제채택은 『월간조선』 2000년 1월호 별책단행본으로 출판된 '한국인의 일생 - 통계를 통한 한국인의 재발견' 74쪽에 '20세기 한국교회 10대 사건(시대순)'에 선정됐다. 10대사건은 ①평양대부흥운동(1907) ②105인 사건(1911) ③3.1운동(1919) ④감리교, 장로교 강제 신사참배 결의(1937, 38) ⑤남북분단으로 북한교회 수난 ⑥여성목사 안수(1953) ⑦70년대인권민주화 운동 ⑧빌리 그레이엄 선교집회 ⑨한국교회100주년기념대회(1984) ⑩ 목사 및 장로임기제도입(1998)이었다.

345호 1991년 7월 28일 창간 1998년 8월 29일

1. 권위적인 양심 2. 권위적인 양심 3. 권위적인 양심 4. 권위적인 양심

목사·장로 안식년제 채택

재시무 시엔 신임투표하기로

우리 교회는 이 목사·장로 안식년제를 채택하였다.

목사·장로 안식년제란 목사는 6년 시무 후 1년간 안식년을, 장로는 4년 시무 후 1년간 안식년을 갖도록 하고, 안식년이 끝나면 당회의 신임투표를 거쳐 재시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선출되어 임직을 받은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발전을 위해 얼마간의 시무를 한 후에 휴무하면서 안식과 더불어 영성훈련과 타교회 탐방, 심신의 재충전, 예배의 회복 그리고 처음 임직할 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교회는 지난 1998년 8월 15일부로 이제도를 채택, 시행에 들어갔다. 채택당시엔 목사는 6년 시무 후 1년간, 장로는 4년시무 후 1년간 안식년을 가진 뒤 안식년이 끝나면 당회의 신임투표를 거쳐 재시무하도록 했다. 재시무를 위한 당회의 신임투표는 2/3이상의 찬성을 얻도록하고, 이때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에 넘겨 신임투표를 받도록 했다.

또한 시행세칙을 통해, 목사는 교회헌편에 따라 안식년을 반납할 수도 있도록 했고, 장로는 우리 교회시무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이미 임직 후 4년이 지난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직후 시무기간이 4년이 되지않은 장로는 임직시를 기준으로 계산기로 하는 등, 경과규정을 두었다. 부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는 매년 말 당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했다.

안식년제가 채택된 그 해, 즉 1998년에 안식년을 맞게 된 이종윤목사는 교회헌편을 감안해 안식년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당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단, 신임투표를 행하기로 하고 무기명비밀투표를 한 결과, 당회의 전원만장일치로 이종윤 목사의 재시무를 받아들였다. 이종윤 목사는 6년이 지난 뒤 2005년에도 안식년이었으나 역시 안식년을 반납하고 시무를 계속했고, 2005년 10월 5일 다시 재신임투표에서 만장일치의 가결을 받았다.

당회는 아울러 교회헌편상 장로 30명선에 이를 때까지는 기수별로 안식년을 시행하기로 했다.

2007년 교회는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목사·장로 안식년을 '4년 시무후'에서 '6년 시무후'로 바꿨다.

대신 경과조치로 2003년 장립된 8대장로들은 4년시무후 안식년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2007년말엔 1대장로였던 김광신, 노문환 장로와, 8대 장로 가운데 최학인, 조성식, 신용식 장로가 안식년에 들어갔다. 이어 2009년말에 김대호, 윤봉준 장로가 안식년에 들어갔다.

당회에서는 안식년제 도입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헌법 제2편 정치 1장 원리 1조에 의거하여 각인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어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 서울교회 당회는 성경교훈에 위반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면서 양심의 자유를 통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목사·장로 안식년제도를 채택하였다.

헌법 제 2편 5장 36조와 6장 46조에 각각 목사와 장로 휴무제도에 의거 서울교회 당회는 안식년제를 도입, 목사 6년 그리고 장로 4년 시무 후 1

년씩 안식년을 갖기로 한다.

안식년 후 재시무를 할 때는 헌법 2편 5장 37조 2항과 6장 47조 2항에 목사와 장로가 자의 사직했다가 복직 할 경우 목사는 노회원, 장로는 소속 당회원의 2/3 이상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 서울교회 당회는 안식년을 가진 목사와 장로가 사직은 아니지만 휴무 및 사임의 복직에 대하여 헌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정신에 따라 당회원 2/3이상 허락을 받아 재시무기로 한다. 단 당회에서 2/3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하는 것이 신앙양심 상 합당하다고 서울교회 당회는 해석한다.

목사가 안식년을 가진 후 당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를 거쳐 헌법 해석서 제 4장 52조 3항에 의거 처리한다.

장로가 안식년을 가진 후 당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헌법 2편 6장 43조 2항, 헌법해석서 제 4장 62조에 의거 공동의회에 물어 시무여부를 처리할 수 있다.

"휴무기간 중 장로의 그 직위는 계속 되나 당회 성원수를 위한 정원에는 계산 되지 않는다."는 헌법해석서 제 4장 56조에 의거, 성찬식 시 교회 화목과 일치에 위해 휴무기간 중이라도 장로의 직분을 감당 할 수 있다.

목사·장로 안식년제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

1) 교회 헌법 제 2편 제 1장 제 2조의 '교회의 자유' 원리에 의해 "개인의 양심과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규칙, 교인의 자격, 교회의 정치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는 항목에 준하여 본 규정을 정한다.

2) 헌법 제 2편 정치 1장 원리 1조에 의하면 각인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어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 서울교회 당회는 성경교훈에 위반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면서 양심의 자유를 통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목사·장로 안식년제도를 채택하였다.

3) 헌법 제 2편 5장 36조와 6장 46조에 각각 목사와 장로 휴무제도에 의거 서울교회 당회는 안식년제를 도입, 목사 6년 그리고 장로 4년 시무 후 1

년씩 안식년을 갖기로 한다.

안식년 후 재시무를 할 때는 헌법 2편 5장 37조 2항과 6장 47조 2항에 목사와 장로가 자의 사직했다가 복직 할 경우 목사는 노회원, 장로는 소속 당회원의 2/3 이상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 서울교회 당회는 안식년을 가진 목사와 장로가 사직은 아니지만 휴무 및 사임의 복직에 대하여 헌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정신에 따라 당회원 2/3이상 허락을 받아 재시무기로 한다. 단 당회에서 2/3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하는 것이 신앙양심 상 합당하다고 서울교회 당회는 해석한다.

목사가 안식년을 가진 후 당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를 거쳐 헌법 해석서 제 4장 52조 3항에 의거 처리한다.

장로가 안식년을 가진 후 당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헌법 2편 6장 43조 2항, 헌법해석서 제 4장 62조에 의거 공동의회에 물어 시무여부를 처리할 수 있다.

"휴무기간 중 장로의 그 직위는 계속 되나 당회 성원수를 위한 정원에는 계산 되지 않는다."는 헌법해석서 제 4장 56조에 의거, 성찬식 시 교회 화목과 일치에 위해 휴무기간 중이라도 장로의 직분을 감당 할 수 있다.

목사·장로 안식년제 정착단계에

장로도 6년 시무 후 1년 안식년으로

우리교회는 서울교회 규정 중 목사·장로 안식년제를 수정하여 헌법 제 2편 5장 37조 2항과 6장 47조 2항에 목사와 장로가 자의 사직했다가 복직 할 경우 목사는 노회원, 장로는 소속 당회원의 2/3 이상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 서울교회 당회는 안식년을 가진 목사와 장로가 사직은 아니지만 휴무 및 사임의 복직에 대하여 헌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정신에 따라 당회원 2/3이상 허락을 받아 재시무기로 한다. 단 당회에서 2/3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하는 것이 신앙양심 상 합당하다고 서울교회 당회는 해석한다.

목사가 안식년을 가진 후 당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를 거쳐 헌법 해석서 제 4장 52조 3항에 의거 처리한다.

장로가 안식년을 가진 후 당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헌법 2편 6장 43조 2항, 헌법해석서 제 4장 62조에 의거 공동의회에 물어 시무여부를 처리할 수 있다.

"휴무기간 중 장로의 그 직위는 계속 되나 당회 성원수를 위한 정원에는 계산 되지 않는다."는 헌법해석서 제 4장 56조에 의거, 성찬식 시 교회 화목과 일치에 위해 휴무기간 중이라도 장로의 직분을 감당 할 수 있다.

①, ② 순례자 345호 1998년 8월 23일 자
③ 순례자 803호 2007년 6월 3일 자

교회 홈페이지 - 신천지 바로알기 교육

우리교회 홈페이지(<http://seoulchurch.or.kr/>)에 신천지 이단의 실상을 알려주는 배너가 제작되었다. 교회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천지 OUT!"을 클릭하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http://antiscj.cbs.co.kr/>) 등 신천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점검위원 추가 임명

- * 예배위원회
 - 1부 헌금 - 김동건2 김희순2 이옥수 정갑례 임흥수
- * 찬양위원회
 - 가브리엘 찬양대 : 알토 이유리2 / 베이스 최유희
 - 할렐루야 찬양대 : 알토 김신영1
 - 호산나 찬양대 : 소프라노 옥희숙
 - 은빛찬양대 : 여성 백인선 최종옥
- * 교육위원회
 - 초등부 : 부감대행 권상열
 - 청년2부 : 김영선1
 - * 새가족위원회
 - 등록관리부 : 임근수
 - * 교구위원회
 - 이화용(5-9 부다락방장)
 - 노옥자(10-6 부다락방장)

2016년 8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8월 21일 주일 1,2,3부 예배 시 2016년 네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달(격월) 3째주 주일 1,2,3부 예배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 예배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

- 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위원회 세례교육부(607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유아세례/는 다음과 같다.
- * 세례자 : 권기형, 최규민, 황해진, 김종엽, 김순제, 김태현, 손시정 계 7명
- * 유아세례자 : 전재한, 신지호, 김제인 계 3명 총 10명

신앙강좌부 강사 선임

당회는 지난 8월 20일(토) 속회에서 원종천 목사의 사임으로 공석 중인 신앙강좌부(부장 : 송용훈 집사)강의를 올 연말까지 김철홍 교수(장신대, 장년 1부 지도)가 담당하기로 했다.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

- 예 선 : 10월 9일 (주일)
- 본 선 : 10월 14일 (금)
- 범 위 : 히브리서 11장(믿음) 로마서 8장 (소망) 요한일서 4장 (사랑)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8월29일(월) 전주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특강을 한다. 9월 3일(토) 사랑의쌀운동과 몽골 국제를 린바타르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추대 : 4교구 김중윤 집사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조사위원(이사)
- 박사학위: 11교구 홍석현 집사(조정옥 권사 장남)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의학박사, 8월 30일 6교구 엄창호 성도(김은정 집사 부군, 김병용 집사 김성은 권사 사위)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 주일식당봉사 : 베드로선교회 (8.28) 안드레, 발립 선교회(04)

- 금주의 식사제공 : 교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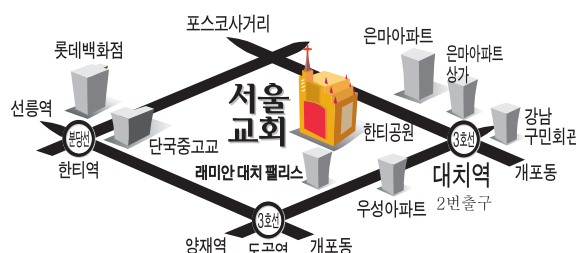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금주 수요일부터 개강하는 다락방 리더 훈련에 모든 다락방 리더들(간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이 참석하여 은혜가 넘치는 다락방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2.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3.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분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분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